

대법원 2018. 2. 8 선고 2017다269824, 2017다269831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부당이득금 · 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2. 8 선고 2017다269824, 2017다269831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수원지방법원 2017. 9. 7 선고 2017나58236, 2017나7955 판결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대한

피고, 피상고인서울특별시 마포구

독립당사자참가인, 상고인싱크컵 주식회사

판결 선고2018. 2. 8.

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나58236, 2017나7955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

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박상옥

대법관김신

대법관이기택

주심대법관박정화